

사업년도	· · · ~ · · ·	신 탁 재 산 에 대 한 원 천 징 수 세 액 확 인 서				법 인 명 (사업자등록번호)				
※ 관리번호	-	원천징수의무자 (사업자등록번호)					제출연월일			
※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										
①채권등의 명칭 ()	②유가증권 표준코드	③채권이자 구 분	④신탁재산명 (법인명)	⑤이자지급일	⑥소득대상지급 기간 (이자계산일수)	⑦이자율	⑧이자상당액	⑨세율	⑩원천징수 세액	⑪납부일 (징수일)
합 계										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신탁재산별로 작성합니다.

1. 법인명란 :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2. 원천징수의무자란 :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.
3. ①채권등의 명칭란 : 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·지방채·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적고, ()에는 액면가액(권면금액)을 적습니다.
4.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: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적습니다.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5. ③채권이자구분란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3호서식(1)의 ⑱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6. ④신탁재산명(법인명)란 :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을 적며, 「신탁업법」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적습니다.
7. ⑤이자지급일란 :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적습니다.
8. ⑨세율란, ⑩원천징수세액란 :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.
9. ⑪납부일(징수일)란 :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습니다.